

서울교육대학교 - 국립등산학교

상호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국립등산학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양 기관의 자율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 다만, 양 기관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.

1. 서울교육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등산교육 지원
2. 초등학교 등산 및 등산교육 보급·확산을 위한 상호협력
3. 등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·운영
4. 강의 및 연수 인력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단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(효력발생) 본 협약서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다만, 본 협정서는 제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2019년 2월 26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김경성

김 경 성



국립등산학교

National Mountaineering School

국립등산학교
교장 임홍길

임 홍 길